

「搨印節目」으로 본 世祖年間 大藏經 印出*

A Study on the *TapinjeolMok*

吳龍燮(Oh, Yong-Seob)**

◁ 목 차 ▷

- | | |
|-----------------|--------|
| 1. 緒言 | 4. 結言 |
| 2. 搨印節目의 내용분석 | <참고문헌> |
| 3. 史料로서의 가치와 한계 | |

< 초 록 >

세조 3-4년에 있었던 대장경 50건의 인경작업은 우리나라 고인쇄출판사업에 있어서 가장 대규모의 사업이었다. 탐인절목은 당시의 인경작업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기술해 놓았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분석하면 당시의 인경작업의 개요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 한계는 없지 않으나 그것의 가치는 지대하다고 하겠다. 곧 이 책을 통해 당시 인경의 목적, 물자준비와 조달, 인경과정과 정책, 봉안사실 등을 비교적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부가적으로 수확한 새롭고 중요한 사실도 있었다. 곧 종래 대장경 50건의 인경을 위해 세조 3년에 물자준비를 하고 이듬해에 50 건 모두를 인경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탐인절목에서는 세조 3년에는 순왜지와 교왜지로 불리는 종이로 3건을 인경하였고, 이듬해에는 잡초지로 불리는 열등종이에 47 건을 인경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왜지와 유사한 종이에 인쇄한 사실은 일본종이나 이와 유사한 종이에 인쇄된 서책이라도 한국본일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서책의 감정에 보다 주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요어 : 탐인절목, 인경, 순왜지, 교왜지, 왜지, 잡초지

* 본 연구는 인천전문대학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仁川專門大學 文獻情報科 教授 (woojook@icc.ac.kr)

접수일: 2005년 5월 29일 최초심사일: 2005년 6월 3일 심사완료일: 2005년 6월 20일

<ABSTRACT>

It is reported the fact were printed 50 copies of the Sutras in the *TapInJeolMok* from third to fourth year of King Sejo(世祖)'s rule. This project is the largest of the Korea old printing works.

As the result of this study, I know that this book have great value in spite of contain several errors. And the facts found are intention of Sutras printings, prepare and supply of goods, printing processing and binding and enshrinement. Additionally I got new and important facts.

That is, 3 copies of the Sutras were printed out on printing papers are called the Soonwaeji(純倭紙) and Gyowaeji(交倭紙) in the third year of King Sejo(世祖)'s rule. Also 47 copies of the Sutras were printed out on printing papers are called Jabchoji(雜草紙) in the next year. This record means that there are an ample hope for Korean books, even if it were so printing books on similar Japanese paper.

Keywords : TapInJeolMok, Sutras printing, Soonwaeji, Gyowaeji, Japanese paper, Jabchoji,

K C I

1. 緒言

국가적인 대장경판 조성사업의 뒤에는 반드시 인경과정이 있었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경판 조성사업과는 달리 인경에 대한 기록은 별로 전하지 않는다. 전한다 하더라도 인경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거나 아주 단편적인 사업개황을 알 수 있을 뿐이다. 현재 해인사에 전하는 高麗新雕大藏經(八萬大藏經)은 오늘날에도 거의 완전하게 보존되고 있는 만큼 이 대장경이 완성된 이후 많은 인경사업이 있었음은 王朝實錄과 海印寺의 寺刹板木¹⁾ 및 개인문집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世祖 3-4년에는 대장경을 50건이나 인경한 일이 있다. 당시의 인경사실은 물자의 준비와 완성에 대해서는 세조실록에 전하고 있으나 내용은 인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당시의 인경사실은 다행히도 탐인절목에 전하고 있다. 이 기록을 통해 세조 초기 엄청난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시킨 대장경 50건 인경사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 곧 물자의 수요 및 조달, 인경일정 및 봉안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세조가 친히 지은 菩薩戒와 金守濫이 지은 印成大藏經跋을 통해 당시 인경의 배경도 살필 수 있다. 그러나 탐인절목이 수록하고 있는 내용이 원래 간략하였는지 아니면 전사할 때 略錄한 탓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더러 이해하기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기도 하다. 이제 탐인절목의 내용을 분석하여 인경사업 전체를 一瞥하고자 한다.

2. 揚印節目의 내용분석

현재 탐인절목은 별도의 책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덕무의 『靑莊館全

1) 「伽耶山海印寺古籍」, 「海印寺史籍」, 「海印寺事蹟」, 「海印寺古籍大藏經跋文」 등의 表題名으로 된 각 圖書館의 所藏本들은 目次の 편성에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海印寺刹板木을 印出하여 製冊한 것으로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書 叢葉記」중 海印寺藏經條²⁾에 실려 있다. 물론 이덕무가 탐인절목을 보고 略錄³⁾하기 이전에도 이 책을 본 기록이 전한다. 곧 申必淸(1647-1710)이 보았다는 印大藏膽錄⁴⁾과 兪拓基(1691-1767)가 임진년(1712)에 해인사를 방문하고 쓴 기록 중의 “膽錄一大冊”⁵⁾은 이덕무가 기록할 때의 底本인 “膽傳 擲印節目一冊”과 동일한 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은 세조 3-4년 당시 대장경 50권을 인경하기 위한의 물자준비·인경과정 및 장책·봉안 등에 대한 인경사실과, 김수온이 지은 인경발문 그리고 세조가 지은 보살계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경사실은 세조 3-4년 당시 인경에 소요된 물자 등을 정확한 수치와 함께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사료이다. 김수온이 지은 인성대장경발⁶⁾과 세조가 지은 보살계 역시 당시 인경의 목적이나 배경 등을 수록하고 있어 역시 중요시된다.

한편 탐인절목을 수록하고 있는 「청장관전서」는 국내 영인본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그 영인본은 규장각 소장본을 저본으로 하고 국내외 전존하는 여러 본을 참고로 완성하였다고 한다.⁷⁾ 또한 규장각 소장본은 미국 캘리포니아

2) 李德懋, 「靑莊館全書」卷55, 叢葉記2 海印寺藏經條.

3) 李德懋가 이 글을 쓴 시기는 海印寺藏經條에 ‘내가 일찌기 海印寺를 유람하였고, 또한 笥記가 있으니 寒竹堂筆記에 자세히 실려 있다’(李德懋, 「靑莊館全書」卷55, 叢葉記, 海印寺藏經條의 末尾, “海印寺藏經樞燹, 藏于無說殿, 乾隆庚子(正祖4年:1780)正月 初八日, 殿火經樞燹. 余嘗遊海印寺, 亦有笥記, 詳載寒竹堂筆記”)라고 하였으니 寒竹堂筆記를 撰述하고 난 후의 일임을 알 수 있다. 寒竹堂筆記는 壬寅年(正祖6年:1782)2월 18일에서 22일 사이에 기록한 것이니 위의 기사는 正祖 6년 3월 이후로부터 그가 운명한 해인 正祖 17년(1793)사이의 11년 중에 쓴 글이다. 그러므로 擲印節目이 완성된 이후 약 300여년이 지난 뒤에 기록한 것이다.

4) 申必淸, 遊伽耶山錄, 「竹軒集」卷7(李智冠 編著, 「伽耶山海印寺誌」, 陝川: 伽山文庫 1992), p.816, “日亦暮, 入禪堂, 呼僧輩, 出古蹟, 有麗王教旨, 光陵教旨, 各一章, 事蹟記, 印大藏膽錄, 各一冊”.

5) 兪拓基, 遊伽耶記, 知齋齋集, 卷15(李智冠 編著, 「伽耶山海印寺誌」, 陝川: 伽山文庫, 1992, p.827), “大藏經印出時, 膽錄一大冊, 而其糜費之宏侈, 不可殫記”.

6) 金守濫이 지은 「印成藏經跋」은 현재 海印寺에 목판으로 전하고 있고, 후대에 跋文題를 「印大藏經五十件跋」으로 改題하여 전하는 목판도 있다.

7) 奎章閣本 「靑莊館全書」는 1966년에 서울大學校古典刊行會에서 서울大學校 古典叢書 第3輯으로 影印된 후로, 1978년에는 民族文化推進會에서 國譯하면서 原文에 標點하여 각 책의 뒷부분에 收錄하였다.

대학 소장의 아사미(淺見)문고본을 저본으로 삼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⁸⁾ 필자가 아사미문고 소장본과 국내 영인본을 함께 살핀 결과, 양자 간의 차이는 거의 없으나 監董諸臣 등의 내용에서 아사미문고 소장본이 보다 완전하다고 판단되므로 원문은 아사미문고에 소장된 「청장관전서」 중에서 해당부분을 발췌하여 분석한다.

2.1 식량(쌀)

①天順元年戊寅八月日 來二月爲始所用米麵 附近各官稂 上米五千石

⑦赴役僧數公糧僧七千五十七 私糧僧一千四百八十五 供給中米四千六百七十九石六斗⁹⁾

위의 내용은 대장경 50건 인경을 위해 동원된 인력, 즉 赴役僧들을 위한 식량의 준비와 조달에 대한 것이다. 내용은 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근 각 官에서 쌀 5천석¹⁰⁾을 준비하였는데, ⑦의 기록을 보면 소비된 쌀이 4,679석 6두였다 하니 쌀의 수요와 소비에 대한 계산이 거의 일치한 것을 알 수 있다. 곧 당시 인경 작업에 동원된 연인원은 公糧僧 7,057인과 私糧僧 1,485인 등 승려 8,542인이 담당하였고, 이들에게 공급된 쌀은 4,679석 6두였던 것이다.¹¹⁾ 다만 약 3개월간, 동원된 인력만도 연인원 8,542인이 되는 방대한 작업을 위해서는 쌀 외에도 여러 종류의 식량이 필요하였을 것이지만 기록이 전하지 않아 살필 수 없는 점이 아쉽다.

8) 李丙燾, 「국역청장관전서해제」 第1冊,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8), p.5.

9) 원문은 ①-⑨의 차례로 되어 있으나 ①과 ⑦은 물자 중 식량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함께 다룬다.

10) 「東閣雜記」에도 쌀 5천석을 소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李廷馨, 「東閣雜記」上(「大東野乘」, 卷53), “世祖三年天順丁丑, 教印出大藏經五十件 … 戊寅二月始役, 四月畢印, 分藏于各道名山巨刹, 凡入紙地三十八萬八千九百餘貼, 役糧五千石他物稱是”.

11) 「搨印節目」, “赴役僧, 公糧僧七千五十七, 私糧僧一千四百八十五, 供給中米四千六百七十九石六斗”.

그런데 ①의 내용에서 “天順元年戊寅”은 年號의 연 표시와 干支가 어긋나 있다. 곧 天順이라는 연호는 明나라 英宗의 重祚 시 연호인데, 천순 원년은 세조 3년(1457)으로 간지로는 丁丑이다. 그러므로 천순 원년이 옳으면 간지는 정축이 되어야 하고, 戊寅이라는 간지가 옳으면 천순 2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사의 내용은 인경이 시작될 오는 2월에 필요한 5천석의 쌀을 준비할 것을 전년 8월에 지시한 것이다. 인경은 천순 2(1458)년 2월부터 하였으므로 식량(쌀)을 준비할 것을 요구한 시점은 전년 수확기인 천순 원년 8월의 일이므로 간지로는 丁丑이다. 그러므로 원문은 “天順元年丁丑”이 옳다

2.2 순왜지와 교왜지의 인경 및 장책

- ②天順元年九月二十六日 右副承旨金碩¹²⁾ 次知純倭紙二件 交倭紙一件 校正結裏上京 裝冊經衣紙 松染 大藏經衣紙 全羅道九百九十卷 慶尙道九百九十卷 忠清道九百七卷十張 江原道四百五十一卷五張 黃海道五百十卷五張
- ③天順二年二月二十三日 同副承旨鄭軾 次知印出純倭紙交倭紙 裝結時 一冊張數 百張以限定 給[結]¹³⁾ 合爲一冊 或過百張 不及百張 亦可 心經目連經 張數不多 經一冊 合五六經 合結

②의 내용은 두 사건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세조 3년 9월 26일에 純倭紙 2건과 交倭紙 1건 등 3건을 인경하여 校正하고 속을 묶은 뒤 上京한 일이고, 둘째는 松染한 표지로 裝冊할 것을 정하고, 이에 각 도별로 표지의 수량을 할당한 일이다.

위의 내용에서 주목되는 것은 세조 3년 가을에 순왜지와 교왜지로 대장경 3건을 인경하였다는 사실이다. 곧 지금까지 대체적인 시각은 세조 4년에 50건을 한 번에 인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한 해전에 고급지로 판단되는 순왜지, 교왜지에 3건을 인경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여타 기록에 전하지 않으므로 혹 연월의 오기가 아닌가하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의

12) 국내영인본은 “合質”로 되어 있음.

13) 국내영인본과 아사미문고본 모두 “給合爲一冊”의 “給”은 “結”로 수정표시를 해 두었음.

해결을 위해 당시 인경과정과 완성 후 봉안일정 등을 살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당시 인경한 인본은 세조 4년 8월 10일에 완성한 보살계에는 “50건의 인경과 표지까지 끝냈다”¹⁴⁾고 하였다. ④의 내용을 보면 세조 4년 7월 24일에는 왜지계통의 인본으로 판단되는 3본의 인본을 興天寺 등에 봉안하기로 결정되었는데, 3일 뒤 세조는 “정은이 대장경 3질을 바치니 흥천사에 봉안하라”¹⁵⁾고 명하였으니 동일한 인본을 말한 것이 틀림없다. 또 7월 24일에는 잡초지로 인경한 47건 중에서 1건의 봉안처로 福泉寺가 결정되고, 9월 24일에는 나머지 잡초지 인본도 ⑤와 같이 각기 봉안처가 결정되었다. 이와 같이 세조 4년 7월 24일에는 50건의 장책작업까지 모두 완성된 시기였다. 그러므로 표지를 준비하는 ②의 내용의 연월은 순차적으로 맞는 것이다. 또 ③과 같이 천순 2년 2월 23일에는 장책의 구체적인 요령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 때 장책의 대상이 된 인본은 바로 천순 원년 9월 26일에 속만 묶어 가지고 온 순왜지와 교왜지에 인경한 3건인 것이다.

그러므로 ②의 내용은 당시 인경작업의 전후사실로 보아 오류 또는 오기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곧 세조 3년에 순왜지와 교왜지를 이용한 3건의 인경이 있었음이 분명한 것이다. 이 3건의 인본은 세조 3년에는 속만 묶은 상태, 곧 가철된 상태였으나 이듬해 2월에 표지가 마련되자 장책을 ③과 같이 하게 되었다. 대개 100장 전후를 한 책으로 묶되 장수가 많지 않은 經論들은 5-6경론을 합하여 장책하는 것이었다. 표지의 수는 1책의 장책 시에 100장 가량을 묶을 것을 計上하여 인경지 납부수량의 약 100분의 1을 각 도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장책하였을 경우 매 1건당 종이가 7,717첩 10장¹⁶⁾이 소요되므로 1건당 책 수는 대개 1,540여 책이었을 것이다.

14) 世祖, 「菩薩戒」, “印成大藏五十件 裝潢已訖.”

15) 「世祖實錄」卷13, 4年 7月 壬子條, “海印寺印經敬差官鄭垠, 進大藏經三件, 命置興天寺”.

16) 大藏經 1건당 入紙數는 李德懋가 略錄한 「揚印節目」의 내용중에서 제 ⑥항의 기사를 근거로 하였다.

2.3 인본의 봉안

④天順二年七月二十四日 右副承旨合碩¹⁷⁾ 次知大藏經五十部印出 海印寺一本 興天寺一本 禮曹一本 四十七件內 一件擇善 福泉寺安邀 其餘安邀 各寺和尚 議論啓聞

⑤天順二年九月十四日 都承旨曹錫文 次知四十七件內 陝川海印寺二件 高靈盤龍寺四件 晉州白巖寺一件 五臺寺一件 七佛寺一件 凝石寺一件 星州龍淵寺一件 安峯寺一件 靈山普林寺一件 密陽載岳寺一件 安東白蓮寺一件 梁山通度寺一件 中方寺一件 大菴寺一件 慶州天龍寺一件 佛國寺一件 咸陽君子寺一件 宜寧菩提寺一件 永川居祖寺一件 鼎鄉寺一件 尙州觀音寺一件 楊州檜巖寺一件 砥平上元寺一件 順天松廣寺一件 康津萬德寺一件 靈巖道岬寺一件 綾城雙峯寺一件 長興成佛寺一件 光陽玉龍寺一件 茂長懺堂寺一件 南原勝蓮寺一件 海南大菴寺一件 珍原下清寺一件 泰仁雲住寺一件 務安法泉寺一件 光州證心寺一件 潭陽龍泉寺一件 報恩福泉寺一件 沃川地勒寺一件 高城楡岾寺一件

④의 내용은 50건의 장책작업까지 마무리되자 순왜지, 교왜지 인본 3건과 잡초지 인본 1건을 봉안한 기록이다. 海印寺, 興天寺, 禮曹에 각 1건씩 3건을 봉안한 인본을 순왜지와 교왜지 인본으로 보는 이유는 ⑥에서 “잡초지 47건”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3건은 순왜지 2건과 교왜지 1건을 일컫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해인사 인경경차관이었던 정은이 대장경 3건을 바치자 이를 흥천사에 봉안하게 하였다”¹⁸⁾는 3일 뒤의 세조실록의 기사와 일치한다. 잡초지 47 건 중에서 善本 1건을 택해 報恩의 福泉寺에 안치한 것은 福泉寺가 당시 인경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信眉가 중창하고 인경작업이 끝나자 그가 돌아가 머물렀던 사찰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기록에는 인본의 단위에 대한 명칭이 특이하다. 곧 세조실록과 탐인절목에서 인본은 “件”이라는 단위로 일컫는데 본 항에서 만은 “五十部”와 “一本” 등 “部”와 “本”이라는 단위도 혼용하고 있는 것이다.

⑤의 내용은 잡초지 47건에 대한 전국 사찰로의 봉안상황이다. 잡초지 47건 중에서 1건은 이미 7월 24일에 福泉寺에 봉안을 결정하였으므로 실은 46건의 봉안사실인 셈이나 모두 44건의 봉안사실만이 기록되어 있다. 분치의 결정은 여러

17) 국내영인본과 아사미문고본 모두 “合質”로 되어 있음. 金碩의 誤記임

18) 『世祖實錄』 卷13, 4年 7月 壬子條

고승이 하였다고 하므로 그 연유에 대해서는 추후 考究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경상도 13처 21사 25건, 전라도 14처 14사 14건, 경기도 2처 2사 2건, 충청도 2처 2사 2건, 강원도 1처 1사 1건 등 모두 32처 40사에 44건을 봉안하고 있으니 이를 지역별, 사찰별, 인본 건수 등으로 나누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印本の 分置 狀況

地 域		寺刹名(件數)	地 域		寺刹名(件數)
慶尙	陝川	海印寺(2)	全羅	順天	松廣寺(1)
	高靈	盤龍寺(4)		康津	萬德寺(1)
	晋州	百巖寺(1)		靈巖	道岬寺(1)
		五臺寺(1)		綾城	雙峯寺(1)
		七佛寺(1)		長興	成佛寺(1)
	星州	凝石寺(1)		光陽	玉龍寺(1)
		龍淵寺(1)		茂長	懺堂寺(1)
		安峯寺(1)		南原	勝蓮寺(1)
	靈山	普林寺(1)		海南	大菴寺(1)
	密陽	載岳寺(1)		珍原	下清寺(1)
	安東	白蓮寺(1)		泰仁	雲住寺(1)
	梁山	通度寺(1)		務安	法泉寺(1)
	慶州	中方寺(1)		光州	證心寺(1)
		大菴寺(1)		潭陽	龍泉寺(1)
天龍寺(1)		忠清	報恩	福泉寺(1)	
佛國寺(1)			沃川	地勒寺(1)	
咸陽	君子寺(1)	京畿	楊州	檜巖寺(1)	
宜寧	菩提寺(1)		砥平	上元寺(1)	
永川	居祖寺(1)				
尙州	鼎鄉寺(1)				
	觀音寺(1)				
江原	高城	楡岾寺(1)	5道	32處	40寺 (44)

한편 이 때 봉안된 인본들은 소량이 일본에 전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그 片鱗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기록상으로 전하는 것은 大正 연간에 오다(小田幹治郎)가 대장경 3부의 인경을 위해 결판을 조사한 뒤 빠진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月精寺 및 金剛山 正陽寺에 소장된 인본을 찾아 그 부족분을

보충하였다¹⁹⁾고 한다. 그런데 昭和 12년에 다카하시(高橋亨)가 대장경 2부를 인출할 때 분실된 경판의 보충을 위해 금강산 정양사에 있는 세조 때의 인본으로부터 결판분 16張(丁)을 보충하였다²⁰⁾고 하므로 세조 4년의 인본이 어떤 경로로 정양사로 移安되어 昭和년간까지 수장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²¹⁾

2.4 인경지와 표지의 조달

⑥天順二年 九月十四日 慶尙道經紙九萬九千四百貼 全羅道九萬九千四百貼 忠清道九萬七百五十四貼 江原道四萬五千一百二十六貼 黃海道五萬一千一百二十六貼 純倭紙一萬七千二百五十四貼 交倭紙八千六百三十四貼 印經正入三十八萬五千八百九十五貼內 雜草經²²⁾四十七件 每一件所入七千七百七十貼十張 凡三十萬二千七百二十二貼十張 純倭紙二件 所入七千七百七十貼十張 雜草紙經四十七件 衣紙正入 三千四百二貼十二張

⑥의 내용은 50건 인경을 위해 각 도별로 납부한 인경지의 수와 잡초지분 47건의 건당 所要紙數와 총 소요지수, 순왜지분 2건과 교왜지분 1건의 건당 소요지수 및 잡초지의 장책을 위한 衣紙(表紙)의 수를 기록하고 있다. 각 지역별 인경지수 배분의 근거는 각 도의 땅의 규모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²³⁾

한편 당시 인경에 소요되는 종이의 준비에 대해서는 세조실록에도 전하므로 실록의 기사를 살펴 대비해 보고자 한다. 세조는 처음 桂陽君 璫을 통해 승정원에 전지할때는 406,200권을 준비하라²⁴⁾고 하였으나 조금 지나 충청, 전라, 경상,

19) 小田幹治郎, “高麗大藏經奉獻顛末,” 『小田幹治郎遺稿』(神戸: 小田稿, 1931), p.68.

20) 高橋亨, “高麗大藏經板印刷顛末,” 『朝鮮學報』 2輯 (1951), 215-217.

21) 世祖 3-4년 印本の 傳存에 대한 기록으로는 다음이 있다.

李裕元, 『林下筆記』 卷32, 旬一編 2, “正陽寺藏經”條

李裕元, 『藏經閣重修記』(『伽耶山海印寺誌』, 97).

高橋亨, “高麗大藏經板印出顛末,” 『朝鮮學報』 2輯 (1951), 217.

菅野銀八, 『高麗板大藏經に就いて』, 『朝鮮史講座 特別會議』(京城: 朝鮮史學會, [1930年代]).

木宮泰彦, 『日本古印刷文化史』(東京: 富山房, 昭和 7年), 332.

小田幹治郎, 『内地に渡れる高麗板大藏經』(『小田幹治郎遺稿』, 神戸: 小田稿, 1931), 85.

22) 국내영인본에는 “雜草紙經四十七件”와 같이 “紙”가 첨가되어 있음.

23) 金守溫, 『印成大藏經跋』, “分其地之廣狹 以定出紙之多寡.”

강원, 황해관찰사에게 구체적인 수를 제시하였다. 곧 충청도는 51,126권, 전라도는 99,004권, 경상도는 99,004권, 강원도는 45,126권, 황해도는 51,126권 등 총 345,386권을 납부할 것을 명하였던 것이다.²⁵⁾ 이 수는 처음의 406,200권 보다 60,814권이 부족한데 이는 매년 각 도에서 납부한 종이²⁶⁾의 여분이 있었거나 아니면 造紙署에서 납부할 순왜지 또는 교왜지의 수²⁷⁾로 추정될 수 있다. 당시 인경지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인 東閣雜記에서는 388,900餘貼²⁸⁾이 소요되었다고 하였다. 상호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 대비해보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듯이 세조실록과 탐인질목의 인경지수를 비교하면 강원도와 황해도는 동일하고, 경상도와 전라도도 거의 같은데 비해 충청도만이 처음에 납부해야 할 수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다. 아마 가뭄의 피해로 인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자²⁹⁾ 그 부족분을 고루 나누어 부담시키지 않고 처음부터 납부할 수가 적었던 충청도에 부담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총 인경지수의 차이는 세조실록에 있는 수는 준비하고자 한 계획된 수량이고, 탐인질목에 있는 수는 인경 후의 실제 소요된 수량인 만큼 그 차이는 이해될 수 있겠다.

24) 「世祖實錄」卷8, 3年 6月 壬子條. “命桂陽君璿, 傳于承政院曰, 大藏經五十件, 印出紙四十萬六千二百卷, 諭諸道.”

25) 「世祖實錄」卷8, 3年 6月 戊午條, “曰, 大藏經五十件, 印出所入, 忠清道紙五萬一千一百二十六卷 … 全羅道紙九萬九千四百卷 … 慶尙道紙九萬九千四百卷 … 江原道紙四萬五千一百二十六卷 … 黃海道紙五萬一千一百二十六卷”.

26) 實錄의 記事에 의하면 各道는 每年 納付할 종이의 數가 있었으나 水災나 旱災의 被害가 있을 경우 輕減받기도 하였다.(「世祖實錄」卷7, 3年 3月 乙丑條, “傳旨戶曹曰, 減今年慶尙道冊紙一千卷, 江原道二百五十卷”).

27) 成俔, 「慵齋叢話」卷10(「國譯大東野乘」冊1, 서울: 民族文化推進黨, 1984. p.656), “世宗設造紙署 … 又造印書諸色紙, 其品不一, 有藁精紙 … 純倭紙, 其極其精.”

28) 李廷馨, 「東閣雜記」上(「大東野乘」卷3), “敎印出大藏經五十件 … 凡入紙地三十八萬八千九百餘貼”.

鄭元容의 「袖香編」卷4(서울: 同文社, 1971). 284, “大藏經印版”條 에서는 “五十件所入, 印紙入三十八萬八千九百餘貼, 役糧五千石. 一件印紙七千七十八貼 과 같이 入紙數가 388,900貼, 役糧이 5,000石이라 하여 所用된 入紙數와 役糧에 대한 기록이 「東閣雜記」와 동일하다.

29) 「世祖實錄」卷9, 3年 8月 乙巳條, “戶曹啓, 京畿及下三道 今旱饑饉流移者 必多.”

「世祖實錄」卷9, 3年 10月 丁酉條, “上問其義璘對曰, 比年水旱, 相仍民不聊生”.

<표 2> 印經紙와 表紙의 각 도별 분배와 조달³⁰⁾

區分	世祖實錄(卷)	摺印節目(貼)		東閣雜記(貼)
		印經紙 ³¹⁾	表紙	
忠淸	51,126	90,754	907卷 10張	
全羅	99,004	99,400	990卷	
慶尙	99,004	99,400	990卷	
江原	45,126	45,126	451卷 5張	
黃海	51,126	51,126	510卷 5張	
其他		純倭紙 17,254 交倭紙 8,634		
計	345,386	411,694(385,895)	3,849 卷	388,900 餘

이와 같이 탐인절목의 기록은 인경지의 종류와 정확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믿을만한 기록으로 보인다. 그러나 잡초지 1건을 인경하는데 사용된 수와 순왜지 1건을 인경하는데 사용된 수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잡초지 1건당 사용된 수와 잡초지 47건에 사용된 총 수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대장경 1건을 인경하는데 소요되는 종이의 수를 살펴 이 기록의 상호 어긋나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⑥에서 대장경 1건을 인경하는데 소요되는 수가 잡초지분은 7,770첩 10장이고, 순왜지분은 7,717첩 10장으로 되어있다. 종이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1건을 인경하는데 소요되는 지수는 동일하여야 하는데도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대장경 1건을 인경하는데 소요되는 지수를 살펴본다. 필자가 大藏目

30) 종이 한 축(束)은 20張으로 卷, 貼, 牒 同 一 하다
徐首生, “八萬大藏經과 佛教文化史上的 價値性 및 保存策” 『高麗大藏經研究資料集』II (陝川: 海印寺, 1989), p.407.
李 詹, “楮生傳,” 『東文選』 卷 101.

31) 411,694첩은 모든 인경지수를 합한 것으로 준비한 수이고, 385,895첩은 탐인절목에서 기록해 둔 인경지수로 실제 사용한 수로 보인다. 양자 간에는 25,799첩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 50건 인경에 필요한 소요분보다 약 16%를 더 준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순왜지의 경우는 2건을 인경하기 위한 소요분보다 1,819첩을 더 준비하여 약 9%, 교왜지는 1건을 인경하기 위한 소요분보다 916첩 10장을 더 준비하여 약 9.4%를 더 준비하였다. 이렇게 인경지를 더 준비한 이유는 인쇄 시에 발생하는 刷損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錄에 기재된 入紙數를 직접 조사해보니 7,718첩 13장이었다. 李德懋는 당시 目錄을 보고 적은 海印사장경조의 첫 기사에서 1건의 인경을 위해 필요한 종이는 7,728첩 2장이 된다³²⁾고 하였다. 또한 서수생 교수는 대장목록의 오류를 지적하고 실제 경판의 지수를 조사한 결과 154,299장으로 이를 첩(권)으로 환산하면 7,714첩(권) 19장이 된다³³⁾고 하였다. 이렇게 보면 대장경 1건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대개 7,720첩 내외의 종이가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매 1건당 인출하는데 所用되는 지수는 잡초지분의 기록인 7,770첩 10장보다는 순왜지분의 기록인 7,717첩 10장이 옳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7,770첩 10장이라는 誤記는 한자로 수를 기록할 때 前後字를 도치하였을 가능성에서 해결된다. 즉 “七七十七”에서 뒤의 두 자인 “十七”을 “七十”으로 도치하여 기록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또한 잡초지 1건에 소요되는 종이를 7,770첩 10장으로 하였을 때 47건에 필요한 종이는 365,213첩 10장이 된다. 이 수는 ⑥의 302,720첩 10장과는 많은 차가 나고 있을 뿐 아니라 숫자상으로도 유사성도 없다. 이러한 점도 1건당 지수를 7,717첩 10장으로 수정하면 그 실마리가 풀리게 된다. 즉 1건당 소요지수를 7,717첩 10장으로 하여 47건의 지수를 산출하면 총 지수는 362,722첩 10장이 된다. 이 수량은 바로 뒤에 기록된 잡초지 47건을 인출하는데 소요되는 지수인 302,722첩 10장과는 6만장의 차가 나지만 그 이외의 수자단위는 동일하다. 이를 근거로 하면 ⑥의 기록 중의 잡초지 47건에 소요된 총 인경지수인 “三十萬二千

32) 徐首生교수는 「八萬大藏經과 佛教文化史上的 價値性 및 保存策」(『高麗大藏經研究資料集』II, 陝川: 海印寺, 1989. p.407-412)에서 大藏經 1건을 인출하는데 소요되는 入紙數를, 실제 大藏經板의 확인을 통해 조사한 결과 실제 소요되는 입지수는 大藏目錄의 入紙數보다도 103장이 많은 것을 밝혔다. 兩者간의 印出紙의 차는 86개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勅(525)-銘(528)函의 新華嚴經論(大藏目錄이 231장이 많음), 更(571)函의 大藏目錄(大藏目錄이 109장 많음), 經(629)函의 續一切經音意(실제 경판의 장수가 238장 많음)가 큰 차가 나고 있다. 그리고 徐教授는 大藏經 1건을 인출하는데 소요되는 인출지는 大藏目錄에 명시된 入紙數 7,720牒 2張(154,402장)보다 103장이 적은 7,714牒 19張(154,299장)이라고 하였는데 大藏目錄에 명시되었다는 入紙數에 대한 근거가 애매하다.

33) 徐首生, “八萬大藏經과 佛教文化史上的 價値性 및 保存策,” 『高麗大藏經研究資料集』II(陝川: 海印寺, 1989), 407.

七百二十二貼 十張”은 “三十六萬二千七百二十二貼 十張”의 誤記로 보인다. 전 후의 수치가 일치되기 위해서는 三十과 萬사이에 “六”이 첨가되어야 한다. 곧 잡초지 47건의 총 소요지수는 302,722첩 10장이 아니라 362,722첩 10장으로 수정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수정하면 잡초지 47건을 위한 종이가 362,722첩 10장, 순왜지 2건을 위한 종이가 15,435첩, 교왜지 1건을 위한 종이가 7,717첩 10장 등 총 385,875첩이 필요하게 된다. 이 수는 총 385,895첩이 소요되었다는 答인질 목의 총 소요지수와 거의 일치되는 것이다.

2.5 監董諸臣

⑧監董諸臣 奉直郎行成均主簿鄭垠 保義將軍行龍驤衛攝護軍尹贊 推忠佐翼功臣 通政大夫承政院³⁴⁾ 都承旨經筵參贊官兼尙瑞院尹修文 殿直提學知製教充春秋館修 撰官兼判奉常寺事知吏曹內直司樽院事曹錫文 輸忠衛社協策靖難同德佐翼功臣崇 政大夫吏曹判書上黨君韓明澮 輸忠云云功臣崇政大夫判中樞院事集賢殿大提學知 經筵春秋館事兼判吏曹吉昌君權孳 輸忠云云功臣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集賢殿大 提學知春秋館事兼判兵曹事成均館大司成高靈君申叔舟 崇祿大夫判中樞院事修文 殿大提學兼判戶曹事李仁孫 輸忠衛社同德佐翼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鈴川府院君 尹師路 輸忠云云功臣桂陽君璿(官高者從左而右)

위의 내용은 인경작업을 監董한 인물들의 품계, 관직, 인명이 기록되어 있 다.³⁵⁾ 세조실록에서는 桂陽君璿, 尹贊, 鄭垠, 曹錫文 등이 인경과 관련되어 등장 하지만 위의 기록을 통해 보면 이들 외에도 申叔舟, 韓明澮, 權孳, 李仁孫, 尹師 路 등 당시 최고의 관료들이 모두 감동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 실은 金守溫이 지은 “印成大藏經跋”에 의하면 세조 3년 겨울에 계양군 증, 윤사 로, 신숙주, 이인손, 권람, 한명회, 조석문에게 대장경 50부를 인출하라는 교지를 내렸다는 내용과 일치한다.³⁶⁾

34) 국내영인본은 承政院이 承文院으로 되어 있다.

35) 국내영인본은 曹錫文아래 輸忠衛社부터 申叔舟까지 혼동되거나 결락되어 있다. 곧 신숙 주의 관직은 혼동되어 있고, 한명회와 권람의 품계, 관직, 인명 등은 결락되어 있다

36) 金守溫, 『印成大藏經跋』, “上傳旨于桂陽君臣璿 … 尹師路 … 申叔舟 … 李仁孫, 權孳 … 韓明澮 … 曹錫文等”.

2.6 印成大藏經跋³⁷⁾ 과 普薩啓³⁸⁾

인성대장경발은 金守濫이 지은 것이고, 보살계는 世祖가 친히 지은 것이다. 이 중 보살계는 대장경 50건의 인경에 대한 세조의 所願을 알 수 있다는 점과 인출 후 이러한 의식이 거행되었다는 점, 그리고 왕이 지은 보살계의 형태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인성대장경발은 善山府使 金仁民이 쓴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김인민이라는 인물을 조사함으로써 탐인절목의 사료로서의 신빙성과 완성시기를 살피고자 한다. 김인민이 언제 선산부사로 재직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실록의 기사를 근거하여 살펴보면 세종 24년 6월에 戶曹佐郎³⁹⁾이 된 후 동왕 26년에는 持平의 벼슬에 올랐으며⁴⁰⁾ 이어 세종실록을 찬수할 때는 記注官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⁴¹⁾ 대장경 50건 인경을 하기 직전인 세조 원년 12월에는 原從功臣 2등에 祿하여 지고, 동왕 9년에는 兼司憲執義가 되었다.⁴²⁾ 성종 연간에는 豐儲倉守로 있다가 그가 故事에 익숙한 것을 인정한 申叔舟에 의하여 判校職에 추천되어 承文院判校가 되었다는 기사가 전한다.⁴³⁾ 실록에 나타난 그의 봉직기간은 세종

37) 金守濫이 지은 「印成大藏經跋」은 木板에 板刻되어 여러 차례 인출되었고, 그 印本은 국내 여러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海印寺관계 문헌에 合綴되어 전하고 있다. 또 그 跋文은 「印大藏經五十件跋」이라는 跋文題로도 각판되어 현재 「印成大藏經跋」의 목판과 함께 海印寺의 西板殿에 보존되고 있다.

38) 원문은 생략함. 다만 아사미문고본과 국내영인본의 해당부분을 대비하니 몇 곳에서 異字가 있어 소개한다. “信眉”와 “守眉”(아사미문고본)는 “信看”과 “守看”(影印本原文p.37下左), “是盖無遠”(아사미문고본)은 “是皆無遠”(影印本原文p.38上左), “悉皆消隕”(아사미문고본)은 “悉皆消損”(影印本原文p.38下右), “五十”(아사미문고본)은 “五十件”(影印本原文p.38下左) 등이다.

39) 「世宗實錄」卷96, 24年 6月 己丑條, “佐郎金仁民 …”.

40) 「世宗實錄」卷105, 26年 7月 壬辰條, “金仁民守司憲持平”.

41) 「世宗實錄」附錄 撰修官條, “記注官宣節將軍龍驤侍衛司, 左領護軍, 兼副知承文院事, 臣金仁民”.

42) 「世祖實錄」卷2, 元年 12月 戊辰條, “傳旨議政府曰 … 金仁民副正”.

「世祖實錄」卷31, 9年 閏7月 癸亥條, “司憲持平金仁民 … 兼司憲執義”.

43) 「成宗實錄」卷44, 5年 閏6月 戊申條, “豐儲倉守金仁民 …”.

「成宗實錄」卷47, 5年 9月 辛未條, “… 叔舟又曰 … 豐儲倉守金仁民, 練達故事, 可爲判校”.

24(1442)년부터 성종 9(1478)년까지로 그의 주된 활동의 시기는 세조 연간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탐인절목을 쓴 김인민이라는 인물은 고사에 익숙하고 서체에 능한 당대의 인물이니 탐인절목의 신빙성은 입증되는 셈이다. 또한 완성 시기는 김인민의 주된 활동 시기와 세조 4년 8월 10일에 지은 보살계를 수록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50건 인경이 완성된 직후인 세조 4년 8월 이후부터 늦어도 성종 연간까지로 볼 수 있겠다.

한편 日本의 다카하시 도오루(高橋 亨)가 金剛山 正陽寺에서 본 인본 44)과 日本 増上寺 인본에 김수온의 대장경발문이 있다고 하니, 대체로 김수온의 이 발문은 세조 3-4년의 인경 때 함께 장채된 것으로 보인다.45)

3. 史料로서의 가치와 한계

3.1 가치

세조 3-4년의 인경사실은 세조실록, 김수온의 “인성대장경발” 그리고, 殘片의 인본 등을 통해 당시의 인경사실의 사실여부는 확인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탐인절목의 기록은 당시 인경의 목적, 인경기간, 물자의 준비와 조달, 인경지의 중

「成宗實錄」卷48, 5年 10月 癸巳條, “金永堅 … 金仁民承文院判校”.

44) 高橋亨, “高麗大藏經板印刷顛末,” 『朝鮮學報』2輯(1951).

45) 金守濫이 大藏經跋文을 쓴 시기는 天順 2年(1458) 6월이고, 大藏經의 裝冊은 純倭紙, 交倭紙本の 3건과 雜草紙本 1건을 안치한 날인 7월 24일 이전에 마쳤으므로 이미 이때 金守濫의 跋文의 刻板된 후 인출되어 卷末에 裝冊되었을 수 있다. 또 燕山君 6年(1500)에 大藏經을 인출할 때 跋文을 쓴 사람이 學祖로 그는 世祖 4년에 인경할 때도 관계하였던 인물이니 혹 그가 燕山君 6年の 인경본에 金守濫의 跋文을 첨부시켰을 수도 있다.

金斗鍾 博士는 「韓國古印刷技術史」(서울: 탐구당, 1974), p.189에서 日本의 増上寺에 收藏된 藏經의 卷末에 金守濫의 印大藏經50件的 跋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増上寺 收藏本이 世祖 3년에 海印寺에서 인출된 것'이라고 하였으나 世祖 3-4년 50건 인경 당시 金守濫의 跋文題는 「印成大藏經跋」이므로 혹 후대에 跋文題를 改題하여 刻한 「印大藏經五十件跋」과 혼동하지 않았나한다. 만일 위의 기사가 사실이라면 増上寺 收藏本은 훨씬 후대의 인본일 가능성이 있다.

류, 그리고 인본의 봉안까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이러한 점은 바로 탐인절목의 사료로서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제 각 항목별로 그 가치를 살피기로 한다.

첫째, 인경의 목적이다. 곧 인경발문과 보살계를 보면 당시 인경의 실제적인 목적은 선왕과 죽은 아들이 극락세계에 오르고, 중생과 미미한 사물까지 복리를 함께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대장경인본은 일본에 下賜한 일이 많아 국내에 거의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⁴⁶⁾ 일시에 많은 부수를 인경하여 여러 명산의 사찰에 두루 안치하게 된 것이었다.

둘째, 인경기간과 인본의 완성시기이다. 이는 세조실록의 기사와 견주어 보면 인경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잡초지분 47건의 인경을 위해서 세조 3년에 물자준비를 하고, 세조 4년 2월부터 4월까지 인경을 완성하였다. 약 3개월 간의 인경기간은 세조가 처음 지시한 기간보다 2달이나 먼저 완성한 것이었다. 아마 여름철의 雨期에 인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3개월에 걸친 집중작업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 7월 24일 이전에 장책을 끝내어 8월 10일에 海印寺에서 法會를 여는 것으로 50건 인경작업이 모두 끝나게 된 것이다⁴⁷⁾.

셋째, 인경지와 표지의 준비와 조달상황이다. 인경을 위해 필요한 물자 중에서 수량에 맞는 인경지의 준비는 필수적이다. 세조실록에는 세조 3년에 인경지의 준비를 위해 전국 5도에 각 도의 규모에 맞는 인경지의 납부를 명한 기사가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탐인절목의 기록을 통해 처음 명한 것과는 달리 다소간의 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충청도는 처음 요구 수량보다 39,628첩이 많았다. 그리고 장책을 위한 松染한 표지는 100장 전후를 한 책으로 장책할 계획에 따라, 각 도는 인경지 납부수량의 100분의 1을 별도로 납부하였다.

넷째, 인경에 순왜지, 교왜지와 잡초지를 사용한 기록이다. 이 기록은 종래 세조 4년 인경에는 漢麻와 닥을 섞어 초조한 종이⁴⁸⁾ 또는 열등한 종이로 인경한

46) 金守溫, 「印成大藏經跋」, “然間被國家賜于日本 存者無幾”.

47) 世祖, 「普薩啓」. “印成大藏五十件, 裝潢已訖, 以本月初十日, 於海印寺, 特設法會者 … 天順二年八月初十日”.

것으로만 이해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새로운 내용이다. 더욱이 세조 4년에 50건을 한 번에 인경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곧 당시 인경은 세조 3년에 순왜지와 교왜지로 3건을 먼저 인경하여 가철하여 두었고, 이듬해에 잡초지로 47건을 인경하여 모두 50건을 완성한 작업이었던 것이다.

세조 3년 인경 당시 사용한 순왜지와 교왜지는 對馬島에서 購得 한 왜지를 재료로 한 종이일 것이다. 순왜지는 慵齋叢話에 造紙署에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49) 왜지가 보급된 세종 때부터 조지서에서 초조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50) 이와 같이 국가기관인 조지서에서 순왜지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대장경의 인경뿐 아니라 다른 서책들의 인출에도 사용되었음은 自明하다고 하겠다. 곧 후대인 17세기 중엽에 “倭楮로 종이를 만들면 극히 보물될 만한 것이다”⁵¹⁾고 한 유형원의 기록에서 보듯이 그 수량은 적었을지라도 이러한 종이는 상당기간 抄造되어 서책의 인쇄에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뿐 아니라 일본에 전하는 서책 중에서 왜지와 유사한 종이에 인쇄된 것들은 보다 정확한 감정이 요구된다.

잡초지는 端宗 2년에 “議政府에서 戶曹의 明文에 의거해 닥나무를 써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草節木皮 1근을 楮皮 3량에 섞어 만든 종이, 즉 잡초지를 만들어 사용⁵²⁾하도록 권장한 기사에서 처음 보인다. 그러나 재료의 혼합비율로 보면 늦어도 世宗 16년부터 이미 사용하였던 것이다⁵³⁾ 그리고 세조 4년 7월에는 “잡

48) 『世祖實錄』 卷8, 3年 6月 壬子條 “命桂陽君瑄, 傳于承政院曰 … 用漢麻 雜以楮皮 造漚”.

49) 成俔, 『慵齋叢話』 卷10 『國譯大東野乘』 冊1,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84), p.656. “世宗設造紙署, 監造表箋咨文紙. 又造印書諸色紙, 其品不一, 有藥精紙, 柳葉紙, 柳木紙, 薏苡紙, 麻骨紙, 純倭紙, 其極其精”.

50) 成俔의 『慵齋叢話』 卷10에서는 “今則只有藥精柳木, 兩紙而已”라 하여 慵齋叢話を 撰할 당시(燕山君 10년1504)에는 이미 純倭紙는 抄造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純倭紙 抄造기간의 下限은 成宗을 지나 燕山君 10년까지로 보아야 하나, 新羅동국여지승람의 각 지역 별 토산조로 미루어 볼 때 中宗 때까지로도 볼 수 있다.

51) 柳馨遠, 『磻溪隨錄』 卷3, 田制後錄 上, “倭楮造紙 極是可寶 今漸絕無矣”.

李裕元, 『林下筆記』 卷22, 文獻指掌編 12, 楮品條 (서울: 成大 大東文化研究院 1961), p.551.

52) 『端宗實錄』 卷11, 2年 6月 壬寅條, “議政府據戶曹呈啓, 我國產楮處小, 而京外所用紙, 皆收楮於民間, 弊甚不貲, 今用草節木皮一斤, 和楮皮三兩, 爲紙, 亦可用, 請自今, 不得已, 用楮紙外, 常時所用, 并用雜草紙 從之”.

초지는 민간에서 이미 그 이점을 알고 사용하고 있는데 관리들이 오히려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이들에 대해 彈劾하라는 명⁵⁴⁾을 내리는 것을 보아 세조 연간에는 이미 일반 대중들이 보통 사용하는 冊紙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 째, 인본의 완성 후 봉안사실이다. 당시 50건의 인본은 인경 후 계속되는 일본의 求請에 조선정부가 사급하는 형식으로 일본으로의 유출이 계속되었음을 왕조실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⁵⁵⁾ 그러나 당시 완성한 50건은 처음에는 전국의 명산복지의 사찰에 봉안되었을 것인데 榻인절목은 50건의 分置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이 외에도 식량준비와 조달, 당시 인경사업에는 세조와 함께 당대 最高의 관료들이 監董의 명분으로 同願者 형식으로 참여한 사실도 알 수 있다.

3.2 한계

榻인절목은 당시 인경사실을 살피는데 있어서 사료로서의 가치가 지대하지만 원본이 不傳하는데다 내용상 서로 배치되는 부분도 있어 완전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 이제 그 한계에 대해서도 살핀다.

첫째, 원본이 전하지 않는다. 해인사장경의 내용으로 보면 이덕무가 이 책을 전사할 때의 底本은 김인민이 쓴 稿本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책은 전후에 인쇄된 적이 없었으므로 전사한 내용이라도 전하는 것이 당시 인경사실을 확인

53) 「世宗實錄」卷65, 16年 7月 壬辰條, “命造印資治通鑑, 紙五萬卷, 于造紙所 … 藁節, 麩麥節, 竹皮, 麻骨等物, 因其易備, 每五分, 交楮一分造之, 非惟紙力稍強, 合於印冊, 用楮亦不多矣.”

54) 「世祖實錄」卷13, 4年 7月 戊申條, “傳旨憲府曰, 初用雜草紙, 人多以爲難, 然明知畢竟除弊, 民受其惠, 故強而不弛, 今聞民間果受其利, 今既數年定限非一度, 而官吏, 猶不奉法, 公然用楮紙, 殊無令出惟行之意爾, 憲府一無舉劾者, 以爲勝其任乎, 自今大舉彈劾.”

55) 세조 4년 이후 일본에 인본을 賜給한 것은 이듬해 8월이었다. 곧 “世祖 5년 8월에 日本國王 足利義政이 秀彌등을 보내어 大藏經을 求請하자 世祖는 宋處儉을 사신으로 보내면서 大藏經 1부를 사급하였다”(「世祖實錄」卷17, 5年 8月 壬申條, “遣僉知中樞院事 宋處儉, 齎所求大藏經, 及注解諸經 … 別幅大藏經一部”)고 한다. 당시 국내에는 갖은 일본의 구청에 사급하느라 인본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그렇게 본다면 아마 이 때부터 세조 4년에 완성한 인본이 사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덕무가 전사할 때 고본을 略錄한다고 하였으므로 全文을 전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아마 보다 완전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고본이 전존하였다면 우리나라 고인쇄출판사상 가장 대규모의 작업인 세조 3-4년의 인경작업은 더욱 조명되고, 그 가치도 더욱 제고될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대비하거나 방증할 사료가 없고, 부정확한 기록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50건의 인경시기이다. 세조실록, 인성대장경발 등을 살펴보면 인경은 세조 4년에 완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탐인절목에서는 세조 3년에 순왜지 2건, 교왜지 1건 등 3건, 세조 4년에 잡초지 47건을 인경하였다고 한다. 물론 전반적인 내용으로 보아 탐인절목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사실을 대비하거나 방증할 사료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연호의 연 표시와 간지의 불일치, 인경지수의 차이 등은 탐인절목의 가치에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부정확한 기록은 稿本인 底本의 오류일 수도 있지만 혹 이덕무나 후대의 필사자가 전사할 때의 誤記였을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셋째, 인경지와 쌀을 제외한 다른 물자에 대한 기록이 없다. 목판의 인쇄를 위해 필요한 물자는 인쇄에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위한 식량 등이 있다. 세조실록에는 인경지와 쌀 외에도 먹, 黃蠟 그리고 胡麻油 등의 소요수량과 지역별 분배가 전한다.⁵⁶⁾ 이들 물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기록이 있었다면 황랍과 호마유 등의 사용용도 등을 보다 자세히 규명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4. 結 言

세조 3-4년에 있었던 대장경 50건 인경사실을 전하는 탐인절목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자료가 가지는 한계는 없지 않으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는 지대하다고 하겠다. 곧 당시에 있었던 50건의 인경사업은 우리나라 고인쇄출판사

56) 『世祖實錄』 卷8, 3年 6月 戊午條

업에 있어서 가장 대규모의 작업이었다. 본고에서는 탐인절목의 내용을 차례로 분석하여 인경의 목적, 물자준비와 조달, 인경과정과 정책, 봉안사실 등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부가적으로 수확한 중요한 사실도 있었다. 이제 본문에서 말한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첫째, 종래 세조초기 대장경 50건 인경사업은 세조 3년에 물자를 준비하고 이듬해인 세조 4년에 인경과 정책을 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탐인절목의 내용을 분석해보니 세조 3년에 3건을 인경하고, 47건은 이듬해에 인경한 것이었다. 50건 인경을 위해 정책에 사용된 인경지만 385,895 첩이 소요되는 우리나라 고인쇄출판사상 가장 대규모의 작업이었다.

둘째, 순왜지 2건, 교왜지 1건 등 왜지와 유사한 종이로 3건을 인경하였다는 사실이다. 이 종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왜닥나무를 수입해서 造紙署에서 抄造한 것이다. 이러한 종이로 인경하였다는 사실은 다른 분야의 서책도 역시 인쇄하였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징을 가진 서책을 鑑定할 때에는 보다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다.

셋째, 인경의 목적은 인분을 봉안한 뒤 佛事를 통해 선왕과 죽은 아들이 극락 세계에 오르고, 중생과 미미한 사물까지 복리를 함께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내면적인 이유 외에 당시 일본의 求請에 下賜하느라 국내에는 인분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인경사업을 하게 된 것이었다.

넷째, 현재 전하는 탐인절목의 내용이 全文이 아닐 수도 있고, 일부는 정확하지 못하다. 이러한 한계는 이덕무가 전사할 당시 略錄한다고 하였으니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底本이 된 稿本의 不傳으로 인해 그 사실여부는 규명할 수 없다. 혹 현전하는 「청장관전서」의 완성과정으로 보아 底本の 오류 보다 이덕무나 후대의 필사자가 전사할 때 謬記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참고문헌>

- 「高麗大藏經研究資料集」Ⅱ, 高麗大藏經研究會 編, 陝川: 海印寺, 1989.
- 「국역대동야승」.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84.
- 「大藏目錄」(「高麗大藏經」第39冊). 影印本. 서울: 東國大學校 1957-76.
- 「東文選」. 徐居正 等奉命撰. 影印本. 서울: 太學社, 1975.
- 「碯溪隨錄」. 柳馨遠 撰. 影印本. 서울: 東國文化社, 檀紀 4291(1958).
- 「世宗-世祖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55.
- 「袖香編」. 鄭元容 撰. 影印本. [서울]: 同文社, 1971.
- 「林下筆記」. 李裕元 撰. 影印本. 서울: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檀紀 4294(1961).
- 「靑莊館全書」. 李德懋 撰. 캘리포니아 대학 아사미(淺見倫太郎) 문고 소장본.
- 「靑莊館全書」. 李德懋 撰. 影印本. 서울: 서울대학교 古典刊行會, 1966.
- 「청장관전서:국역」.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8.
- 「韓國佛教全書」第6冊. 韓國佛教全書 編纂委員會 編. 서울: 東國大學校 出版部, 1984.
-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究堂, 1974.
- 朴相國. 「全國寺刹所藏木板集」. 서울: 文化財管理局, 1987.
- 李智冠. 「伽倻山海印寺誌」. 서울: 伽山文庫, 1991.
- 千惠鳳. 「羅麗印刷術의 研究」. 서울: 景印文化社, 1978.
- 小田幹治郎. 「小田幹治郎遺稿」. 神戸: 小田稍, 1931.